

제336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6. 9. 5 ~ 9. 9)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제 336회 임시회

(2016. 9. 5 ~ 9. 9)

# 제336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혹독했던 찜통더위가 어느덧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초가을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사로운 가을 햇살처럼 우리 전라북도 구석구석에 희망과 결실의 기운이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요구한 7조원 가운데 정부가 반영한 예산은 5조8천억원대에 불과하여 자칫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달성마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라북도 중요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도 내년도 국가예산이 요구한 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사회란 출발의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전북이 전국 16개 시도 아동의 삶의 질 수준에서 최하위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아동들의 삶의 질이 대도시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의 권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만큼은 동등한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 책임은 당연히 국가와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지자체 재정격차를 줄이고 사회복지예산을 늘리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 지역적 불균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자라나는 세대에게까지 그대로 전가되는 현실이 없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단절해야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전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덜 행복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전심의회와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생현장으로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황 현

# 목 차

## 제336회 임시회

###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2. 회기 및 운영 .....
3. 의 사 일 정 .....

###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2. 처 리 현 황 .....

###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2. 처 리 현 황 .....
3. 위원회별 처리현황 .....
4. 주요 처리사례 .....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

# I . 집회 및 의사일정

##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6. 9. 1(목)
- 집회 일자 : 2016. 9. 5(월) 11:00
- 집회 사유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6. 9. 15 ~ 9. 9(5일간, 2016년 : 83일, 총누계 362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연누계 : 23, 총 누계 69)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34회 임시회	9	1	1	2	2	1	2	-
2016 년도	106	11	24	18	18	17	18	
총 누 계	617	45	129	86	96	107	118	36

### 3. 의사일정

####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2016 9.5(월) 11:00	<p style="text-align: center;"><b>《 제1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호윤 의원, 최영규 의원, 최인정 의원, 최은희 의원, 박재완 의원, 이해숙 의원, 이현숙 의원</li> </ul> </li> <li>1.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li> <li>2.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li> <li>3.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li> <li>4. 본회의 휴회의 건</li> </ul>	
2016. 9.9(금) 14:00	<p style="text-align: center;"><b>《 제2차 본회의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진호 의원, 이호근 의원, 김현철 의원, 송성환 의원, 김종철 의원, 최인정 의원</li> </ul> </li> <li>1. 긴급현안질문</li> <li>2.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3.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4.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5.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li> <li>6.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li> <li>7. 전라북도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8.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li> <li>10.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1.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2.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li> <li>13.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14. 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li> <li>15.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li> <li>16.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ul>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17.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0.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전라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2.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조례안 23.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천방법 개정 고시안 26.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27.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영위원회	9. 5(월) 10:30	1	○ 일반안전 심사 -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9. 7(수) 14:00	1	○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의안심사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이장·통장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환경복지위원회	9. 6(화) 10:00	1	○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환경녹지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9. 7(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li> <li>- 군산 폐기물업체 방문 :국인산업, 한솔이엠이, 엔아이티</li> <li>- 폐자원에너지자원시설 예정부지 방문</li> </ul>	
산업경제 위원회	9. 5(월)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li> <li>-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li> <li>-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li> <li>-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li> </ul>	
	9. 6(화) 15: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li> <li>- 상용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연구기반 구축 사업장(군산) (상용차 주행시험장)</li> </ul>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9. 6(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안심사</li> <li>-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li> <li>-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li> <li>-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 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li>○ 현지 의정활동</li> <li>-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정읍 고부천 등)</li> </ul>	
교육 위원회	9. 6(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li> <li>○ 의안심사</li> <li>-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 개정 고시안</li> <li>-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li> <li>- 전라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li> <li>-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조례안</li> <li>-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9. 7(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li> <li>- 전북체육중·고등학교</li> </ul>	

## Ⅱ. 의안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36회 (2016. 9. 9기준)

구분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계	금회	30	24	15	9			2			3	1	
	누계	810	488	209	279	10	10	1	153		27	95	36
의회	소계	금회	25	21	15	6						3	1
		누계	440	295	180	115		10	1	5		95	34
	의원	금회	24	21	15	6						3	
		누계	401	295	180	115		9		3		82	12
	위원회	금회	1										1
		누계	39					1	1	2		12	22
	도지사	금회	4	3		3				1			
		누계	268	146	24	115	7			107		14	1
교육감	금회	1							1				
	누계	102	47	4	40	3			41		13	1	

## 2. 처리현황

### ○ 총 괄

제336회 (2016. 9. 9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30	27	21	6				4		
	누계	810	789	657	112		13		7	21	
조 례 안	소계	금회	24	22	16	6				2	
		누계	488	460	370	92		2		4	19
	의회	금회	21	19	13	6					3
		누계	295	279	217	54				4	16
	도지사	금회	3	3	3						
		누계	146	145	109	34		1		1	1
교육감	금회										
	누계	47	45	40	4		1			2	
규 칙 안	금회										
	누계	10	10	10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2	2	2							
	누계	153	151	136	6		8		2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27	27	12	13		2				
건의결의안	금회	3	2	1						1	
	누계	95	95	93	1		1				
기 타 의 안	금회	1	1	1							
	누계	36	36	36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28	25			2			1		24	18	6			4	
	누 계	692	487	10	1	49		27	15	4	671	539	112	14	6	21	
운 영 위 원 회	금 회	1	1								1	1					
	누 계	41	27	10	1				3		40	38	1	1		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 회	7	6			1					7	6	1				
	누 계	139	113			23			2	1	138	118	19			1	
환 경 지 복 위 원 회	금 회	3	2						1		2	2				1	
	누 계	104	91			10			3		100	82	18			4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 회	7	7								5	2	3			2	
	누 계	103	60			40			3		98	48	13	6	1	5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 회	4	4								3	2	1			1	
	누 계	117	78			35			4		113	94	19			4	
교 육 위 원 회	금 회	121	82								116	96	20			5	
	누 계	156	113			41		1		1	149	126	18	2	3	7	
특 별 위 원 회	금 회																
	누 계	28						16	1	1	28	14	12	2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3						2	1	3	3					
	누계	119	1			5		82	31	119	116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30	24			2		3	1	27	21	6			4	
	누계	810	488	10	1	153		27	95	36	789	657	112	13	7	21

#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 기관 및 의안별<접수>

제336회 (2016. 9. 9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810	488	209	279	10	10	1	153		27	95	36
의 회	소 계	440	295	180	115		10	1	5		95	34
	의 원	401	295	180	115		9		3		82	12
	위 원 회	39					1	1	2		12	22
전라북도지사	268	146	24	115	7			107		14		1
전라북도교육감	102	47	4	40	3			41		13		1

##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36회 (2016. 9. 9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810	789	657	112		13		7	21	
조 례 안	소 계	488	460	370	92		2		4	19
	의 회	295	279	217	54				4	16
	도 지 사	146	145	109	34		1		1	1
	교 육 감	47	45	40	4		1			2
규 칙 안	10	10	10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153	151	136	6		8		2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27	27	12	13		2				
건 의 결 의 안	95	95	93	1		1				
기 타 의 안	36	36	36							

## 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송성환김대중 의원 외 12인		제 출 일 자	2016. 02. 0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09. 05
	의 결 일 자	2016. 09. 0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요즘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이나 공동체 텃밭 등 도시 공간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도심생활에서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도시와 농촌 간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와 제2조)
- 나.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라북도와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도지사는 매년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5조)
- 라. 도시농업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5조)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설치) ----- ----- ----- ----- -----) -----) -----)를 둘 수 있다.
제12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도시농업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교육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15조(보조금의 지원) (생 략) 1. (생 략)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4 (생 략)	제15조(보조금의 지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4 (현행과 같음)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에 관한 사항과 결산서 제출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임원의 임면 및 선출방법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안 제6조)
  - 제6조 제목 “임원의 종류와 정수” 를 “임원” 으로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센터 임원의 임면 및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
- 나. 결산서 제출기한 개정(안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제10조 중 “매년 2월말까지” 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로 개정

###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에 관한 사항과 결산서 제출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임원의 임면 및 선출방법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안 제6조)
  - 제6조 제목 “임원의 종류와 정수” 를 “임원” 으로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센터 임원의 임면 및 선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
- 나. 결산서 제출기한 개정(안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제10조 중 “매년 2월말까지” 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로 개정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기대되는 타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道 발전에 폭넓은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근거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 제1항

주요내용

성명	소속/직위	출신	주요경력	비고
정황근 (60.1.20)	농촌진흥청장	충남 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회 기술고시(1984년)</li> <li>○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li> <li>○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li> </ul>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학교 설립, 행정구역 명칭(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학교설립, 행정구역 명칭(주소) 변경 등으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내용 중 일부를 신규 삽입·변경함.
- 나. [전주] 학교 설립, 행정구역 명칭(주소) 변경에 따른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
  - 전주시 2학교군 내 초등학교 신설(전주홍산초등학교 2016.3.1.자 개교)
  -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1980호(2015.7.15.)]으로 통·반 조정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직 특별 휴가 등을 우리도와 비교,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여 직원 사기 진작 필요
  - 장기재직휴가 : 타시도와 형평성 유지 ※ 우리도10일, 타시도 평균 34일
  - 자녀 군입영 동행 휴가(1일) : 국방의무 자궁심 고취
  - 입학(초등학생이하) 동행 휴가(1일) : 자녀 불안심리 해소
- 특별휴가를 통한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제공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성 있는 업무추진

□ 주요내용

- 가. 장기재직 기간에 따른 안식 특별휴가 일수 확대 (안 제23조제15항)
- 나. 배우자 및 자녀 군입영 당일과 초등학교 상당이하 자녀 학교 입학당일(1일) 특별 휴가 1일 신설(안 제23조제16항)

###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송지용·정진제·박재완·강용구·이도영·이해숙·정호윤·최영규·최영일·최은희 허남주 의원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축수산물식품국,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행하는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에 업무 비중이 큰 농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우리도는 농도로 대내외적으로 위원회 명칭에 농산업을 관장하는 위원회로 알릴 필요가 있어 위원회 명칭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산업경제위원회”로 수정(안 제28조~제29조)
- 나.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5항 신설(안 제35조)
- 다.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신설(안 부칙 제4조)

의안번호 787

###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 출 자	의 장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

주요내용

개선대상 위원회	개선요청내용		요청사유
	현재	변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인정 의원	이도영 의원	국민의당소속 의원 상임위원회 변경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한완수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현행 법률상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는바, 전라북도의 경우 정비업종간 작업범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자격소지자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전라북도 정비업계 실정에 맞게 업종별로 구분하고자

□ 주요내용

- 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으로 하고, 각 업종별로 총 정비요원의 5분의 1이상 자격소지자를 확보하도록 개정함(안 제6조제1항)
- 나.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할 경우 해당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의 책임 아래 정비하도록 개정함(안 제6조제5항)

###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선정기준 등을 명시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소속공무원 교육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하여 분석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에 심의기능 추가(제13조제2항제5호)

###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6	심 사 결 과	2016. 9. 6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의사항을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 반영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위원회’ 보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에 대한 심의내용을 삭제(제7조제6호)
- 나. 도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지원대상 확대(제36조)

###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정호윤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 나.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라.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근무환경에 대해 규정함(제5조와 제6조)
- 마.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신청과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함(제7조와 제8조)
- 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박재만정호영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라북도의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 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라.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마.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위촉 해제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바.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평화통일교육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최영규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기본방향을 정함(제2조)
- 나.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제3조)
- 다. 전라북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와 제6조)
- 라. 전라북도교육청의 평화통일 계획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제5조)

##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한완수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창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 특히,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급, 확산, 연구조사에 있어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 이에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육성과 각 지방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 제2조(정의) : 주요 용어의 규정
-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문화원연합회 지원육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 다. 제4조(연합회장의 책무) :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연합회장 책무 규정
- 라.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 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 마. 제6조(재산의 출연 등) : 보조금 이외의 도 재산 출연 근거 마련
- 바. 제7조(사업비의 용도) : 보조금 중 사업비 지원항목 규정
- 사. 제8조(운영비의 용도) : 보조금 중 운영비 지원항목 규정
- 아.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 보조금집행에 대한 도의 검사 감독권한 규정

##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양성빈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예술인은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이에 「예술인복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예술인에 대한 처우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법령 제정 이후 자치조례의 미비로 전라북도 차원의 제도 시행 등 가시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제2조(정의) : 용어의 규정
-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 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 :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및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규정
- 라. 제5조(사업) : 예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의 범위 규정
- 마. 제6조(자문·심의)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의한 관련 사안의 자문 및 심의 규정
- 바. 제7조(실태조사) : 예술인의 근로환경 등에 대한 예술인실태조사 규정
- 사. 제8조(창작공간 지원) : 예술인의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창작공간 지원사항 규정
- 아. 제10조(재정지원) :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의 지원 사항 규정

## 전라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6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

□ 주요내용

-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기본계획 수립 시기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학교숲 조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수목관리대장 비치, 수목처분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최영규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6.9. 2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통하여 접수·발급 처리되는 단순·반복 및 신고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 민원모니터단이 직접 민원인이 되어 참여하고 체험한 결과를 토대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 계획을 정함(안 제3조)
- 나.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위원회” 구성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민원모니터단 운영결과와 주민참여 민원처리 체험·여론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토론회와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학수조병서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부속선의 척수와 규모)을 규정하기 위함
-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어선 외에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부속선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해숙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22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내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항을 규정함
- 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신속히 대응하는 사항을 정함

##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해숙장명식조병사정호영 의원 외 5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도내 학교에 우수 식재료 사용이 필요할 경우, 도내 생산 식자재 사용을 권장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우수식자재 사용 시, 도내 생산 식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사항을 정함

##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이학수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와 『전라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 센터』, 『전라북도 농촌관광 지원센터』, 『전라북도 귀농어·귀촌 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조성, 우수인력 육성 및 확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및 사후관리까지 농어촌 활력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나.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전라북도 생생마을 지원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송지용강용구정진세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 향상 및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명시(안 제4조)

전라북도 이장·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도영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도정운영과 주민복지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이장·통장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도 시책 홍보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3조)
- 다.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및 위문 격려(안 제4조)
- 라. 지원신청 및 사업실적 보고의 방법(안 제5조, 제6조)

##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종철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6.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하여,
-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나. 보조금지원에 따른 관련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안 제6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최영일 의원 외 14인		제 출 일 자	2016. 9. 8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1974년 12월로 유가급등을 대비해 전기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누진제가 시작되어 몇 번의 변화 끝에 지금의 11.7배는 2005년 12월부터 유지되어 만 10년을 넘김
- 그러나 2005년 제도를 설계할 때 보다 1인가구 증가, 소득이 적은 대가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누진제의 원래 취지가 크게 훼손된 상태임
-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바램을 담아 기본에너지인 전기 사용요금 현실화방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온 현행 징벌적 누진제인 주택용 전기요금제를 하루 속히 개편하라.
- 나. 당정은 한시적 조정이 아닌 형평에 맞는 전기요금제로 전면 개편하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이현숙·이학수·강용구·김현철·정진세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6. 9.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9. 9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9. 12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난달 19일 기준 40kg 조생종 벼 가격이 전년에 비해 20% 가량 폭락한데다 20kg 쌀값은 작년 8월 대비 11% 가량이 하락했고 수확철을 앞두고 재고 벼 처리를 위해 저가 출혈 경쟁까지 이어져 평소 6만 원 대에 팔리는 유명 브랜드 쌀이 반값으로 판매되기도 함
- 또한 지난 6월 말 기준 정부의 쌀 재고량은 세계식량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인 80만 톤을 훨씬 뛰어 넘는 175만 톤에 달하고 있고 정부가 무분별한 쌀 수입까지 더해 수입쌀이 전체 재고량 중 25%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음
- 쌀값이 폭락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음에도 정부는 겨우 사료용 대책만 세우고 양곡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의회는 수확기 쌀값 대란이 “현실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태를 비판하며 최악의 쌀값 폭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분야별

(2016. 9. 5 ~ 9. 9)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	환경	산업 경제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 통	도시 계획	건 설	건 축	기 타
금 회	7	1	1							2	1	1		1
2016년 누 계	27	3	4	1	5			1	1	6	1	3		2

○ 제출자별

구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7	7	5		2		
2016년 누 계	27	27	25		2		

####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 리 별					처리중
		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27	27	27				
2016년 누 계	27	27	27				

###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0대)

(2014. 7. 1~ 2016. 9. 9)

구 분	위 원 회 별	접 수	처 리 상 황				비 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58	58	58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5	5	5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8	18	18			
	산 업 경 제 위 원 회	8	8	8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18	18	18			
	교 육 위 원 회	5	5	5			
	기 타	4	4	4			
금회	소 계	7	7	7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1	1			
	환 경 복 지 위 원 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4	4	4			
	교 육 위 원 회	1	1	1			
	기 타	1	1	1			
누계	소 계	65	65	65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6	6	6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8	18	18			
	산 업 경 제 위 원 회	8	8	8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22	22	22			
	교 육 위 원 회	6	6	6			
	기 타	5	5	5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6. 9. 5 ~ 2016. 9. 9)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111	111	111	100
누 계		416	416	416	100	
도	금 회	87	87	87	100	
	누 계	340	340	340	100	
교육청	금 회	24	24	24	100	
	누 계	76	76	76	100	

###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6. 9. 5 ~ 2016. 9. 9)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지	산 업 경 제	문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111	0	26	15	17	20	33
누 계		416	0	96	66	41	80	133	0
도	금 회	87	0	23	14	17	18	15	0
	누 계	340	0	90	59	41	77	73	0
교육청	금 회	24	0	3	1	0	2	18	0
	누 계	76	0	6	7	0	3	60	0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6. 9. 9)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536	1536		
전라북도	1149	1149		
교 육 청	387	387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6. 9. 9)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1536	0	384	210	150	279	501	12
전라북도	1149	0	351	191	139	260	204	4
교 육 청	387	0	33	19	11	19	297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6. 9. 9)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5617	0	1682	579	769	860	1569	158
전라북도	4668	0	1589	546	735	784	955	59
교 육 청	949	0	93	33	34	76	614	99